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2. 15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2. 15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2. 17.(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
상정, 의견서채택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김시만)

가. 제안이유

- 이미 결정되어진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중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 설 명 : 폐기물처리시설(중간처리시설)
- 위 치 : 사하구 다대동 산64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공업지역
- 면 적 : A = 13,000m²(감 9,645m²)
- 신 청 자 : (주)육성산업 대표이사 이해철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4. 토 론 요 지 : 생 략

5. 심 사 결 과 : 의견서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

－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대한 －
의 건 서

I. 도시계획시설 개요

- 시설 명 : 폐기물처리시설(중간처리시설)
- 위 치 : 사하구 다대동 산64번지 일원
- 면 적 : A = 13,000m²
 - ▷ 기존 결정면적 22,645m² 중 9,645m²를 축소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공업지역
- 신청자 : (주)육성산업 대표이사 이해철

II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본 건 대상지는 1998. 5. 14 부산시 고시 제127호로 기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로써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가 이미 결정되어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중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 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시설면적을 축소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임야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금회 본건 대상지에서 제척되는 임야에 대한 부산시의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행위는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, 추후 사하구의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 결정사항과 유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2004. 12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